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13. 10. 21

개정 2018. 03.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2조에 규정된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취득절차와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연속해서 이수하도록 양 학위과정을 통합한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과 지원학과) ① 통합과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3개 학기를 등록하고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2.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석사과정 입학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통합과정 지원학과는 석사과정의 전공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합과정 신청 시 동일하지 않은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인이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선발한다.

제4조(지원서류) ① 통합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과정 지원서(별지서식 1)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별지서식 2) 1부.
3. 연구계획서(별지서식 3) 1부.
4. (석사과정 24학점 이상의) 성적증명서 1부.

② 통합과정 지원서류는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모집대학원과 모집인원) ① 통합과정의 설치·운영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한하며, 특수대학원은 제외한다.

② 모집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인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0조(이수자격 취소)에 따라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서 추가 모집하거나 정시모집으로 충원한다.

④ 벤처전문대학원은 시기와 여건이 갖추어지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선발시기와 방법) ① 통합과정 학생 선발은 학기 개시 60일 전에 공고하고 매학기 말까지 1회 선발하되, 선발인원 미달 시 미달인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정시모집 한다.

② 학생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업연한) 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6개월(9학기)로 한다. (개정 2018.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

제8조(이수학점) ①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기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통합과정의 교과목 수강은 매학기 9학점 이내로 하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의 수강신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석사학위 수여) ① 통합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학기 종료 60일 전에 석사학위신청서를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입학 후 4개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2. 33학점(박사과정 교과목 9학점을 포함한다) 이상을 취득한 자

② 통합과정 학생이 ①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면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1. 박사과정 등록 이전에 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2. 박사과정 교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③ 통합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수료와 동시에 박사과정에 등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 첫 학기는 질병, 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휴학할 수 없다.

④ 통합과정의 탈락이나 이수자격 취소 또는 본인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 제64조(학위수여 자격)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0조(이수자격 취소) 통합과정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통합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한다.

1. 박사과정 진입 이전에 통합과정을 포기한 자
2. 제9조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6학기 말(박사과정 3학기)까지 충족하지 못한 자

제11조(특전) 석사과정 학생이 통합과정 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2. 박사과정 진입 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3. 석사학위 신청 시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사논문 작성을 면제한다.

제12조(학적변동) ①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학적이 변경되는 시기는 석사과정 3학기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입하는 시기인 4학기부터로 한다.

② 박사과정에 진입한 학생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학적을 관리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학칙 등을 준용하며, 대학원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수업연한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